

## 붙임2 <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제출서류 관련 안내>

구분	내용	발급기관
필수서류	1.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	사상구가족센터 홈페이지 ( <a href="https://sasang.familynet.or.kr/center/index.do">https://sasang.familynet.or.kr/center/index.do</a> ) 접속 → 알림공간 → 공지사항 → 해당양식을 출력하여 작성)
	2.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	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무인민원발급기
	2-1. 소득이 있는 부양자일 경우(근로를 하고 본인이 보험료를 낼 경우) :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부모 해당자 모두) → 2024년 4월분부터 발급인정	
	2-2.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일 경우(근로를 하는데 2천만원 이하의 소득자일 경우) : 23년도의 소득금액증명서	정부24, 행정복지센터, 무인민원발급기
	2-3.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일 경우(근로를 안하는 경우) : 사실증명서 → 5~6월 신청자: 22년도 사실증명서 / 7~9월 신청자: 23년 사실증명서	국세청 홈텍스, 행정복지센터, 세무서
	2-4. 프리랜서나 일용직이라서 소득금액증명서가 발급 안 될 경우 : 급여명세서	국세청 홈텍스
	3. 결혼이민자 신분확인을 위한 증빙자료	대법원 전자가족 관계등록시스템, 무인민원발급기
	3-1.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시 → 기본증명서(상세)	
	3-2. 결혼이민자 국적 미취득 시 →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본	-
4. 주민등록등본	정부24, 무인민원발급기	
5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대법원 전자가족 관계등록시스템, 무인민원발급기	
6. NH농협카드 사본(※농협 비씨카드는 제외)	농협은행, 농·축협 (없는 경우 카드 발급)	
해당 시 추가 제출서류 (※가구원 각각 제출)	1. 이혼/재혼 가정 :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+ 가족관계증명서(자녀기준)	대법원 전자가족 관계등록시스템, 행정복지센터, 무인민원발급기
	2. 부와 모의 거주지가 다른 가정 : 주민등록등본(부와 모 각각)	정부24, 무인민원발급기
	3. 사실혼관계 가정 : 사실혼관계확인서(부와 모 각각의 서명 필요)	사상구가족센터 홈페이지 ( <a href="https://sasang.familynet.or.kr/center/index.do">https://sasang.familynet.or.kr/center/index.do</a> ) 접속 → 알림공간 → 공지사항 → 해당양식을 출력하여 작성)
	4. 대리신청(3촌 이내 혈족만 가능) :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	

※ 모든 서류는 원본&방문 제출이 원칙이며, 자격기준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

사상구가족센터